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87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0378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에 지방대학 주변 지역을 포함 (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3

I.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0378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9.

다. 회 부 일 : 2024. 9.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지역주민, 청년)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시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3. 검토의견

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에 지방대학 주변 지역을 포함
(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
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 <u>행정</u>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 12.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 ----- ----- <u>행정·교육</u> ----- ----- ----- -----. 6의3.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 ③ (생략)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수도권정비계획법</u> 」 제2조제1 <u>호에 따른 수도권</u> 이 아닌 지역

성화계획³⁾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②도시재생혁신지구⁴⁾(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③도시재생전략계획⁵⁾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구분됨.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지정 시 현행법 제13조제4항⁶⁾ 각 호의 요건 중 2개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상을 갖추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 요건과 관련된 조항 】

구분	조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국가시범지구 지정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세부기준(현행법 시행령 제17조) 】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이에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7)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고, 혁신지구 및 국가시범지구 기능에 교육을 추가하여 지방대학 주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 노후된 대학 주변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를 재유입시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혁신지구 및 국가시범지구 기능의 경우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서도 교육기능을 추가하여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입법이 불필요하며,

지방대학 주변 지역으로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추가할 경우 수도권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역 내 대학 소재 여부는 해당 도시지역의 쇠퇴와 관련성이 적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581